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제13조 관련)

1. 배합사료

사료명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록성분	수분	셀레늄	첨가혼합제한물질	휘발성염기태질소	중금속					곰팡이		살모넬라 D 그룹	BSE 관련검정	멜라민 관련검정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기타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 A						
1-1. 양축용 배합사료																			
가. 고기소	○	○	△	△		○	△	△	○	○	○	○		△	△	△	△	△	
나. 젖소	○	○	△	△		○	△	△	○	○	○	○		△	△	△	△	△	
다. 돼지	○	○	△	△		○	△	△	○	○	○	○		△	△	△	△	△	
라. 닭	○	○	△	△		○	△	△	○	○	○	○	△	△	△	△	△	△	
마. 오리	○	○	△	△		○	△	△	○	○	○	○	△	△	△	△	△	△	
바. 개	○	○	△	△		○	△	△	○	○	○	○		△	△	△	△	△	
사. 꿩	○	○	△	△		○	△	△	○	○	○	○		△	△	△	△	△	
아. 말	○	○	△	△		○	△	△	○	○	○	○		△	△	△	△	△	
자. 메추리	○	○	△	△		○	△	△	○	○	○	○	△	△	△	△	△	△	
차. 사슴	○	○	△	△		○	△	△	○	○	○	○		△	△	△	△	△	
카. 양	○	○	△	△		○	△	△	○	○	○	○		△	△	△	△	△	
타. 오소리	○	○	△	△		○	△	△	○	○	○	○		△	△	△	△	△	
파. 칠면조	○	○	△	△		○	△	△	○	○	○	○		△	△	△	△	△	
하. 타조	○	○	△	△		○	△	△	○	○	○	○		△	△	△	△	△	
거. 토끼	○	○	△	△		○	△	△	○	○	○	○		△	△	△	△	△	
너. 거위	○	○	△	△		○	△	△	○	○	○	○		△	△	△	△	△	
더. 노새	○	○	△	△		○	△	△	○	○	○	○		△	△	△	△	△	
러. 당나귀	○	○	△	△		○	△	△	○	○	○	○		△	△	△	△	△	
머. 꿀벌	○	○	△	△		○	△	△	○	○	○	○		△	△	△	△	△	
버. 지렁이	○	○	△	△		○	△	△	○	○	○	○		△	△	△	△	△	
서. 배합사료원료	○	○	△	△		○	△	△	○	○	○	○		△	△	△	△	△	
어. 특수배합사료	○	○	△	△		○	△	△	○	○	○	○		△	△	△	△	△	
1-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가. 고기소	○	○				○	○	○	○	○				△				△	
나. 젖소	○	○				○	○	○	○	○				△				△	
다. 사슴	○	○				○	○	○	○	○				△				△	
라. 양(염소)	○	○				○	○	○	○	○				△				△	
마. 농가자가배합사료	○	○				○	○	○	○	○				△				△	
바. 기타	○	○				○	○	○	○	○								△	
1-3. 대용유용 배합사료																			
가. 축우용대용유	○	○	△	△		○	△	△	○	○				△	△			△	

사료명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록성분	수분	셀레늄	첨가 혼합 제한 물질	회발성염기태질소	중금속					곰팡이		살모넬라 D 그룹	BSE 관련검정	멜라민 관련검정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기타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 A						
나. 양돈용대용유		○	○	△	△		○	△	△	○	○				△	△			△
다. 주문용대용유		○	○	△	△		○	△	△	○	○				△	△			△
1-4.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	○	△	△		○	△	△	○	○	○	○		△	△	△	○	△
1-5. 그 밖의 동물용 배합사료																			
가. 실험용 동물		○	○	△	△	△	△	△	△	△	△	△	△	△	△	△	△	△	△
나. 애완용 동물		○	○	△	△	△	○	△	○	○	○	○	○	○	△	△	△	△	△
다. 사육하는 동물		○	○	△	△	△	○	△	○	○	○	○	○	△	△	△	△	△	△
라. 수산동물		○	○	△	△	△	○	△	○	○	○	○	○		△	△	△	○	△
1-6. 기타 검사 대상																			
가. 양축용 배합사료 중 돼지사료는 구리(○), 아연(○)																			
나.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인(○), 말라카이트그린(○), 크롬(△)																			
다.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2. 단미사료

사료명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록 성분	수분	첨가 혼합 제한 물질	회발성 염기 태질소	중금속					곰팡이		살모넬라 D 그룹	BSE 관련 검정	멜라민 관련 검정	동물용 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	잔류 농약	기타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 A							
2-1. 식물성																				
가. 곡물류		○	○	△		○			○	○	○	○							○	△
나. 강피류		○	○	△		○			○	○	○	○							○	△
다. 박류	농축단백질	○	○	△		○			○	○	○	○			△				△	△
	밀글루텐	○	○	△		○			○	○	○	○			△				△	△
	밀배아박	○	○	△		○			○	○	○	○			△				△	△
	옥수수글루텐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라. 서류		○	○	△		○			○	○	○	○							△	△
마. 식품가공부산물류		○	○	△		○			○	○	○	○								△
바. 조류		○	○	△		○	○	○	○	○										△
사. 섬유질류	목초(알팔파 등)	○	○	△		○			○	○									○	△
	꽃배기사료작물	○	○	△		○			○	○									○	△
	고간류	○	○	△		○			○	○									○	△
	섬유질가공사료	○	○	△		○			○	○	○	○		△	△				○	△
	섬유질발효사료	○	○	△		○			○	○	○	○		△	△				○	△

검정성분 사료명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 록 성 분	수 분	첨 가 혼 합 제 한 물 질	위 발 성 염 기 태 질 소	중금속					곰팡이		살 모 넬 라 D 그 룹	B S E 관 련 검 정	멜 라 민 관 련 검 정	동 물 용 의 약 품	△ 말 라 카 이 트 그 린 ▽	잔 류 농 약	기 타	
						납	불 소	비 소	수 은	카 드 뮴	아 플 라 톡 신 류	오 크 라 톡 신 A								
	기타	○	○	△		○			○	○	○	○						○	△	
	아. 제약부산물류	○	○	△		○			○	○	○	○						△	△	
	자. 식물성 유지류	○	○	△		○			○	○									△	
	차. 전분류	○	○	△		○			○	○									△	
	카. 콩류	○	○	△		○			○	○	○	○						○	△	
	타. 견과·종실류	○	○	△		○			○	○	○	○						△	△	
	파. 과실류	○	○	△		○			○	○								△	△	
	하. 채소류	○	○	△		○			○	○								△	△	
	거. 버섯류	○	○	△		○			○	○								△	△	
나. 기타 식 물 류	기타	○	○	△		○			○	○	○	○	○					△	△	
	기타	○	○	△		○			○	○	○	○						△	△	
2-2. 동물성																				
가. 단 백 질 류	가금부산물건조분	○	○	△	○	○	○		○	○			○	△	△				△	
	감마루스	○	○	△	○	○	○	○	○	○			○	△	△		○		△	
	계분	○	○	△	○	○	○	○	○	○			○	△	△				△	
	계란분말	○	○	△	○	○	○		○	○			○	△	△				△	
	골뱅이분	○	○	△	○	○	○		○	○			○	△	△				△	
	동물성단백질 혼합분	○	○	△	○	○	○		○	○			○	△	△		△		△	
	모발분	○	○	△	○	○	○		○	○			○	△	△				△	
	새우분	○	○	△	○	○	○	○	○	○			○	△	△		○		△	
	수지박	○	○	△	○	○	○		○	○			○	△	△				△	
	어분	○	○	△	○	○	○	○	○	○			○	△	△		○		△	
	어즙흡착사료	○	○	△	○	○	○	○	○	○			○	△	△				△	
	우모분	○	○	△	○	○	○		○	○			○	△	△				△	
	유도단백질	○	○	△		○	○		○	○			○	△	△				△	
	육골분	○	○	△	△	○	○		○	○			○	△	△				⊖	
	육분	○	○	△	○	○	○		○	○			○	△	△				△	
	육즙흡착사료	○	○	△	○	○	○		○	○			○	△	△				△	
	육포, 건어포, 육골포, 육어포	○	○	△	○	○	○		○	○			○	△	△				△	
	제각분	○	○	△		○	○		○	○			○	△	△				△	
	혈분, 혈액가공품, 혈장단백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나. 무	골분	○	○	△		○	○	○	○	○				△					△	
	골회	○	○	△		○	○	○	○	○				△					△	
	난각분	○	○	△		○	○	○	○	○			○	△					△	

사료명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 록 성 분	수 분	첨 가 혼 합 제 한 물 질	휘 발 성 염 기 태 질 소	중금속					곰팡이		살 모 넬 라 D 그 룹	B S E 관 련 검 정	멜 라 민 관 련 검 정	동 물 용 의 약 품	△ 말라카이트그린▽	잔 류 농 약	기 타	
						납	불 소	비 소	수 은	카드 뮴	아 플 라 톡 신 류	오 크 라 톡 신 A								
기 물 류	어골회	○	○	△		○	○	○	○	○				△					△	
	어골분	○	○	△	○	○	○	○	○	○			○	△					△	
	패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다. 동물성 유지류		○	○	△	△	○			○	○				△					△	
라. 곤충류		○	○	△	○	○			○	○									△	
마. 플랑크톤류		○	○	△		○	○	○	○	○									△	
바. 낙농가공부산물류		○	○	△		○			○	○			△		△				△	
2-3. 광물성																				
가. 식염류		○	○	△		○	○	○	○	○									△	
나. 인산염류		○	○	△		○	○	○	○	○									△	
다. 칼슘염류		○	○	△		○	○	○	○	○									△	
라. 다량 광물질류		○	○	△		○	○	○	○	○									△	
마. 미량 광물질류		○	○	△		○	○	○	○	○									△	
바. 혼합광물질류		○	○	△		○	○	○	○	○									△	
2-4. 기타																				
가. 유지류		○	○	△		○	○	○	○	○									△	
나. 단세포 단백질		○	○	△		○	○	○	○	○				△					△	
다. 남은음식물		○	○	△	○	○	○	○	○	○	○	○	○		△			△	△	
라. 반려동물용용수		○		△		○	○	○	○	○									△	
2-5. 혼합성 단미 사료		○	○	△	△	○	△	△	△	△	△	△	△	△	△	△	△	△	△	
2-6. 기타 검사 대상																				
가. 남은음식물은 구리(○), 셀레늄(△), 아연(○), 인(○)																				
나. 면실박은 유리고시폴(○)																				
다. 타피오카는 청산(○)																				
라. 동물성단백질혼합분·어분·어즙혼합사료는 크롬(○)																				
마. 혼합성단미사료는 구리(△), 셀레늄(△), 아연(△), 인(△), 유리고시폴(△), 청산(△), 크롬(△)																				
바.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3. 보조사료

사료명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록 성분	수분	중금속					BSE 관련 검정	잔류 농약	기타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3-1. 결착제	○		△	△	△	△	△			△	
3-2. 유화제	○		△	△	△	△	△			△	

사료명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등록 성분	수분	중금속					BSE 관련 검정	잔류 농약	기타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3-3. 보존제	○			△	△	△	△	△			△
3-4. 아미노산제	○			△	△	△	△	△	△		△
3-5. 비타민제	○			△	△	△	△	△			△
3-6. 효소제	○			△	△	△	△	△			△
3-7. 미생물제(생균제)	○			△	△	△	△	△			△
3-8. 향미제	○			△	△	△	△	△			△
3-9. 비단백태질소화합물	○	○		△	△	△	△	△			△
3-10. 규산염제	○	○		○	○	○	△	△			△
3-11. 완충제	○			△	△	△	△	△			△
3-12. 착색제	○			△	△	△	△	△			△
3-13. 추출제	○			△	△	△	△	△		△	△
3-14. 올리고당	○	○		△	△	△	△	△			△
3-15. 기타	○			△	△	△	△	△			△
3-16. 혼합성 보조사료	○	○		△	△	△	△	△	△		△
3-17. 기타 검사 대상											
가.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3의2.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배합기의 정밀도 자가품질검사기준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르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 이상의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정제소금을 이용하는 방법

- 1)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의 양은 배합기 용량의 60 ~ 100%의 범위에서 검사한다.
- 2) 옥수수(입자크기 3mm) 98%에 정제소금(순도 99% 이상) 2%를 첨가하여 일정시간 배합 후 포장 단계에서 12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 3)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염화나트륨(NaCl)을 측정한다.
- 4) 12개 측정값 중 최고값 1개와 최저값 1개를 제외한 10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변이계수를 산정한다.
- 5) 판정 : 변이계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나. 미량성분을 이용하는 방법

- 1) 미량성분은 망간, 아연, 구리, 철을 이용한다.
- 2) 시료의 양, 배합, 시료채취, 변이 계수 산정, 판정 등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 1) 조섬유 또는 조단백질을 이용한다.
- 2) 배합 및 시료채취, 변이 계수 산정 등은 가목을 준용한다.
- 3) 판정 : 변이계수는 20% 이하이어야 한다.

3의3.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마)와 2)다)에 따른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품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제조공장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서 정하는 고기소배합사료, 젖소배합사료, 축우용대용유,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별로 당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제조하는 1개 품목
나. 단미사료의 경우에는 동물성사료 중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동물성단미사료

3의4.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사)와 2)라)의 성분 또는 물질의 자가품질검사주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의5. 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기준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3의6. 자가품질검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성분은 표준분석방법 이외의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조섬유, ADF, NDF, 아미노산은 근적외선분광법(NIR검사법)
1)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NIR장비에 대한 정확한 검량식 작성을 위한 DB 업데이트를 실시
2) 년 1회 이상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3) 최초 검량식 작성을 위한 DB 자료는 축종별·성분별로 200점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매년 DB 업데이트는 축종별·성분별로 30점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곰팡이독소는 신속분석기(Kit)에 의한 간이 검사법(국내외 관련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3의7. 배합사료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 대표적인 2~3개 제품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의8. 미생물제의 자가품질검사 시 년 1회 이상 균주를 동정하여야 한다.

3의9. 식품등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료단계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의10. 제품명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 가. 기본적으로 자가품질검사는 성분등록증(사료명칭)별로 실시해야 함. 다만, 아라비아 숫자 및 주 제품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 제품명 단위까지 세분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해야 함

나. 아라비아 숫자 및 제품명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등록성분은 아라비아 숫자(또는 제품명) 단위까지 구분하여 검사
* 예) 큰소비육후기1, 큰소비육후기2, 육포(제품①), 육포(제품②)를 각각 구분하여 검사. 육포(제품①, 제품②)로 등록된 것은 구분하지 않음
2) 안전성 성분은 아라비아 숫자(또는 제품명) 단위를 통합하여 검사
* 예) 1그룹[큰소비육후기1 + 큰소비육후기2], 2그룹[육포(제품①) + 육포(제품②)]으로 각각 통합하여 검사
* 여러 제품 중 의심나는 제품을 선택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혼합해서 검사하는 것은 곤란

3) 보조 제품명 단계에서 구분된 사료끼리는 등록성분과 안전성 성분을 통합하여 검사

* 안전성 성분은 가급적 원료단계에서 검사 필요

3의11.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실험시설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 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실험시설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6의2 제3호와 같으며 성분등록한 사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검정 설비(장비 및 기구)만 갖추면 됨
- 나.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실험시설 및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됨

3의12. 수입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등

- 가. 수입사료의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수입업자가 ① 품질관리시설(실험시험 또는 실험기기)을 갖추어서 이행하는 방법이 있고, ②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추어도 가능하며, ③ 국내의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하는 것도 가능
- 나. 이때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하여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자가 직접 국외에 갖춘 시설도 품질관리시설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품질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 다.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가 수입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출국의 제조업자 등과 합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정한 방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별표 25)으로 분석하여야 함.
- 라. 수입업자는 다목과 같이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시설을 이용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할 수 있으나, 완제품 상태로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의 원료 및 제품은 가급적 국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운송과정 등에서 부패 및 변질 등이 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3의13. 자가품질검사 의무면제를 위한 제조 및 수입 일시정지 신고 기준

- 가. 사료를 일정기간 제조 및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료 제조(수입) 일시중지 신고를 해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의무가 면제됨
 - * 일시중지 신고 기준 : (배합사료) 3개월 이상, (단미·보조사료) 6개월 이상
- 나. 일시중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 일시중지 신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면 성분등록 취소 대상임
- 다. 사료 제조(수입)를 재개할 경우에는 일시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제를 신청하지 않고 제조(수입)를 재개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제 신청 필요.

3의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에 의거 사료검사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3의15.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1부터 별표 13에서 등록성분 표시가 제외된 사료(육포 등)는 등록성분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수입신고시 정밀검정(무작위표본검정을 포함), 사료검사에서 제외

4. 공통사항

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별표 6에서 정한 품목별 순도시험에 규정된 안전성 관련 성분을 검사할 수 있다.

나.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검사 대상 보조사료는 부형제 등으로 동·식물성단백질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다. 제2호 단미사료 중 혼합성 단미사료와 제3호 보조사료 중 혼합성 보조사료는 주요원료를 기준으로 검사 성분을 조절하여 검정할 수 있다.

라. 기타 성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다.

마. 방사능핵종을 검정의뢰할 경우에는 시료 수거일을 검정의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 표시는 사용한 원료 및 용도(축종 등)에 따라 아래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다.

1) 셀레늄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2) 첨가혼합제한물질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3) 휘발성염기태질소는 수분함량 14% 이상으로 유통 중인 사료 중 의심되는 경우

4) BSE 관련검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가) BSE 비발생국의 경우 해당 배합사료제조공장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추동물용 사료만 실시. 다만, 주문용대용유·실험용·애완용·사육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반추동물용 사료만 실시.

나) BSE 발생국의 경우 모든 해당사료에 대해 실시

다) 동물성 단미사료의 BSE 관련검정의 경우 반추동물유래단백질만을 검사하며, 원료에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포함되었음을 표시한 경우는 BSE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는 실시.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동물성유지류는 불용성불순물 검사 실시

마) 동물성단미사료를 원료로 사용한 아미노산제 및 혼합성보조사료는 실시. 다만,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5) 실험동물용의 경우 납과 수은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을 의도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6)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제품과 의심되는 경우

7) 말라카이트그린은 어분 및 새우분이 혼합된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8) 멜라민은 해당 사료에 멜라민이 혼입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 불소, 비소는 원료단계에서 관리한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10) 살모넬라는 닭의 육계전기, 육계후기, 육계출하와 오리의 육용오리전기, 육용오리후기는 미 실시 가능, 실험용과 사육하는 동물은 산란용만 실시

- 11) 곰팡이독소는 의심되거나 검사대상 원료를 사용한 경우
- 12) 잔류농약은 유기농 원료와 식품등에서 유래된 것,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다만, 부적합식품등에서 유래한 것은 실시
- 13) 크롬은 해당 사료에 크롬이 혼입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14) 보조사료의 중금속은 별표 6에 허용기준이 설정된 경우
- 15) 기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 및 물질이 포함된 사료

사. 반려동물음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다.

사의2. 부형제를 사용한 경우 부형제 종류에 따른 성분을 검정하여야 한다.

아. 별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